

의안번호	2205071
의 퇴 인	천하람의원
회 답 일	2024.11.6.
추계번호	24E46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의 비과세 근거 마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조 (비과세소득), 제20조(근로소득)	○ (제20조)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 등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제12조)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임원 또는 종업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20조(근로소득)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본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할인하여 제공함으로써 해당 임원 등이 얻는 이익(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전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할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종업원 할인제도 규모 등에 대한 자료 필요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임원 또는 종업원에 대한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지 않음¹⁾
 - 따라서 임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제공함으로써 임원 등이 얻는 이익(할인금액)은 임원 등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는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하지만,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관되게 과세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종업원 할인제도 규모 및 이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규모 등에 대한 자료 필요
- 그러나 기업별 종업원 할인제도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도 해당되지 않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